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08호 2012. 9. 5.(수)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68호(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5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5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653호(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5

회							
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9. 0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83번길 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01-3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483번길 6	신축	2009-07-0 9	경원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79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9. 0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 정의(제2조)

-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홍보, 디지털 미디어 명예기자의 정의

○ 사업내용(제3조)

- 구정소식,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사회 및 생활정보, 그밖에 구민 참여 구정 활동 등에 관한 디지털 홍보

○ 구민참여(제5조)

-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 보장, 블로그 기자단 등 명예기자 위촉, 이벤트 개최

○ 예산지원 및 보상(제6조 ~ 제7조)

- 명예기자 교통비, 콘텐츠 제작료 등 지원 및 우수활동자 표창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명예기자 교육, 연수, 견학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디지털 미디어 이벤트 참여 구민 보상 및 표창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9월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정보통신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10-7821, FAX 032-810-7079, yeons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사항
-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디지털 영상, 인터넷방송국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홍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 미디어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란 구의 디지털 홍보 활동을 하는 자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사업내용) 디지털 홍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사회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디지털 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구민들의 질의, 의견,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블로그 기자단 등 명예기자를 위촉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콘텐츠 제작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명예기자 중 콘텐츠를 제출한 후 채택되어 디지털 미디어 매체에 게재된 자에 한하며, 우수활동자에 대하여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벤트에 참여한 구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제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 조례 제정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의 기준을 하향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입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장)
- 입법안 작성 및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장)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당초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에서 50분의 1 이상으로 개정

-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장)
- 자치법규 공포방법 및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장)
-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9월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10-7051, FAX 032-810-7079, 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사항
-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제4조(입법안 작성)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등)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 등의 공포

제13조(조례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14조(규칙의 공포 등) ①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예산·결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일)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기관에 대한 공

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등

제19조(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입법의견의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제관련 규칙 및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 법제사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장)
-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장)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장)
- 자치법규 입법안의 처리절차 및 공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장, 제6장)
-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장)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9월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032-810-7051, FAX 032-810-7079, www.yeonsu.go.kr】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사항
-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자치법규·훈령·예규 등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의 사전 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결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 발췌사항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예산조치사항 및 비용추계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심사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시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과요약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의 협의 신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된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입법안 방침결재 사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포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부서협의 결과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다른 기관의 승인·인가를 입법의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인가문의 사본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법제심사) ①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

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의 저촉 여부, 입법 선례와의 비교, 다른 자치법규와의 균형,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리 등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통보)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입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입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이 조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 등을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

요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감사실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문서의 심사

제11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예규문서
2.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12조(심사절차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심사대상 문서에 대한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법무부서장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

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2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안·예규안
6.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7.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직무대리 순서에 따른 위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

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심의회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입법안 확정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최 10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에도 소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소관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안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실)의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차순위 관계공무원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

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작성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치법규 입법안의 처리절차 등

제25조(조례안 등의 처리절차)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접수한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 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 훈령 및 예규에 대하여는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준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훈령안

및 예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발령하여야 한다.

제6장 공포 및 시행

제27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기획감사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한 후 수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8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업무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9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련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회시

제30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구 본청 주관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이나 소관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 및 그 이유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기타 참고 자료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31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 해석
3. 기타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법규 해석

제32조(질의문 반려)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7. 상급기관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3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심사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회시) ①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2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이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질의에 대하여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규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의 경우)

- ※ 전부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주요 내용 작성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실·과(전화 : ○○○-○○○○~○, FAX : ○○○-○○○○, E-mail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 개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과·소·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과·소·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서			
제 명		주관부서	
분 류	1.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의 구체적 사유</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서술식으로 작성)</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일정</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관련부서 협의 : 20 ~</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입법예고 : 20 ~</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법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 ~</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실·과장 ○ ○ ○</p>			

[별지 제4호 서식]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협의 결과통보서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을 기재)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단축)사유

- 조정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결과 : (생략·단축 가능/불가로 구분하여 기재)

- 검토의견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제 명	
<p style="text-align: center;">【 주 요 내 용 】</p> <p>○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 쟁 점 사 항 】</p> <p>○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적 쟁점사항에 관하여 기술)</p> <p style="text-align: center;">【 검 토 의 견 】</p> <p>○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기재)</p>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일시) / (장소)
- 참석위원 : 총 6명 중 명 참석
-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순번	안 건 명	심의의결사항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1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음.

심의위원

성명 : _____

서명 : _____

안 건 심 의 내 용

안 건 명	원 안	수 정 안	조 건 부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가결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보류결 <input type="checkbox"/> 부결	_____을(를) _____으로 수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서식

<순 서>

1. 작성서식
2. 작성방법
3. 입법안
 - 가. 제정안
 - 나. 전부개정안
 - 다. 일부개정안
 - 라. 폐지안
4. 신·구조문 대비표
5. 관계법령 발췌사항
6. 비용추계서
7. 기타 사항

1. 작성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자치법규안 제명)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

법무의회담당 심사필

제 명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2) 비용추계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평가 :

○ 기 타 :

(1) 입법예고 (20 ~ . . .)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2. 작성방법

가. 표지

- 1)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 2) 의결날짜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날짜 및 연도별 회차 (기획감사실에서 기재함)
- 3) 안 건 명 : 20포인트, 바탕체, 진하게 작성함
- 4) 제 출 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 5) 제출날짜 : 안건을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날짜 기재

나. 본문

- 1) 의결주문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정, 개정, 폐지의 목적, 배경,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 나. ○○○을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을 xx으로 변경함(안 제○○조)
 - 다.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하도록 함(안 제○○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실·국·본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관계법령 : 「○○○법」, 「△△△법」
 -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사항 기재(비용추계자료 별첨)
 - 다) 합의사항 : ○○○실(본부·국)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 . . . ~ . . .) 결과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3. 입법안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를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적용범위) -----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준용)

(중략)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5 조 (▽ ▽ ▽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〇〇〇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 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만 하면 된다.
-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제명)

해당 조문 및 내용 기재

<예시>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나. 추계 결과

-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
국비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사회복지 인건비						
세 출						
총액인건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지방세 등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7. 기타 사항

가. 시 사전보고 서식(조례, 규칙 해당)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명 :

제안자	구청장 (), 의회의원(),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12. .)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 ('12. .)		
의회 의결일	'12. . .	이 송 일	'11.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12. . . ('12. . .)	재의요구기한	'11. . .
근거 법령	0000법, 0000법 시행령		
소관 부서	0000과		
관련광역행정기관	인천광역시 0000과		
제정·개폐사유	○ ○		
주요내용	○ ○		
검토의견			

나. 의회 상정 서식(조례만 해당)

인천광역시연수구 00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2.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 다. 합의부서 :
-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기타안건 건)

. . . () : 00

순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의안명	비고

◎ 작성요령

-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한 순번대로 등재·부여
-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2 이상인 경우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6. 기타 참고자료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